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10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 장동혁 · 주호영 · 박준태

박덕흠 • 고동진 • 조지연

김 건 · 백종헌 · 박정하

이헌승 • 박상웅 • 진종오

김도읍 · 김장겸 · 정점식

인요한 의원(16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로 운영의수익성이 낮아 선사가 운항을 기피하는 항로를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함)로 지정하고, 기존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함)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보조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금액을 전액 보전함에 따라 보조항로사업자는 재투자를 통한 서비스 품질 등을 개선하려는 유인이 저조하고 친환경·스마트 기술의 개발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므로, 국가가 직접 보조항로를 운영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상교통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부는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조항로가 아닌 일반항로 중에서 일일생활권 구축에 기여하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와 연속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단절 우려가 있는 항로를 운항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거가 부재하여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그간 내항여객운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었던 보조항로 운영기관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기반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조항로의 운영기관을 내항여객운송 사업자 중에서만 선정하던 것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하 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5조 제1항).
- 나. 보조항로에 대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 면허를 받아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항로의 보조항로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6항제4호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 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

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자에게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의3 신설).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상교통 공백의 방지를 위하여 여객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에도 여객선 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을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보조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거나, 보조항로운영기관이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 "보조항로사업자가"를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보조항로운영기관이"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를 "보조항로사업자 또는 보조항로운영기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 허를 받은 경우

제15조의2제2항 중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을 "운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 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보조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 자에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 지급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객운송사업자"를 "보조항로운영기 관 또는 여객운송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여객선이 운항되 지 아니하는"을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

앙행정기관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단체의 임직원"을 "단체, 지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임직원"으로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제15조(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	①
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	
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	
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u>내</u>	<u>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u>
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	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
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	다)를 선정하거나, 대통령령으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u><후단 신설></u>	"보조항로운영기관"이라 한다)
	에 위탁하여 운영
	이 경우 보조
	항로를 운영하는 운영기관을 대
	상으로 면허를 하려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
	조제1항제5호 중 여객선등의 보
	유량과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	2
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	

련한 사항은 <u>해양수산부장관이</u>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 한다.

- ③ ④ (생 략)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u>보조항로</u>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 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 3. (생 략) <신 설>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
하거나, 보조항로운영기관이 해
양수산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u> </u>
⑤보조항로
사업자 또는 보조항로운영기관
0]
<u>-1</u>
<u>보조항로</u>
사업자 또는 보조항로운영기관
에게
6
•

- 1. ~ 3. (현행과 같음)
-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보조

⑦ (생략)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 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항로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경우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 <u>은</u> 항

제15조의3(운항결손액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 송사업자가 도서주민의 해상교 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운영하는 항로(보조항로는 제외한다)가 경영 적자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게 해당 항로 운항결손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운항결손액 지급대상의 선정 기준과 지급 방법・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제16조(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은 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u>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u>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 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 ④ (생 략)

제5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저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u> 보
조항로운영기관 또는 여객운송
사업자

2. (현행과 같음)
3. 일시 휴업 등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② ~ ④ (현행과 같음)
#153조 <u>(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u>
위탁)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
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u>.</u>
②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

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운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
인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u>③</u> 제2항
만체,
지방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
단의 임직원